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연리 1.5%,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신청대상

근로형태별	융자 신청 대상
정규직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이상 재직 중인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근로자
비정규직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일수 45일 이상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 한시적으로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13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업무종사자, 퀵서비스업무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 신청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연체,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외국인·재외동포

융자종류 및 한도액

융자종류	신청요건	한도액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90일내 결혼예정 또는 혼인신고 한 경우	1,250만원
자녀 학자금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1,000만원 한도 (1자녀당 연 500만원)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포함)	1,000만원 한도 (실제 발생비용 내)
부모 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치매, 노인성 난청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1,000만원 한도 (피부양자 1인당 연 500만원)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임금감소 생계비	소속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2,000만원(감소임금 내) 한도 '20.12.31.까지
소액 생계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한 경우	500만원 한도 '20.12.31.까지
임금체불 생계비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연간소득액이 5,700만원(배우자 합산) 이하이고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된 경우	1,000만원 한도 (체불임금 내 또는 퇴직 전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20.12.31.까지)

융자조건

- ▶ 연리 1.5%
-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원금균등분할(선택)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고정)
-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1% 신청인 부담)

문의 · 상담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2020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안내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휴업·휴직
수당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부해 드립니다!



대부대상기업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2020. 7. 1.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대부지원 가능액

- 월(회차)별 한도액은 **5억원**(최소 1백만원 이상)
- 고용유지 (휴업 또는 휴직) 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인 소속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할 휴업·휴직수당 명목의 임금에 대해서 대부신청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시 대부 대상 제외되며 고용 및 산재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완납 시 대부 가능

대부조건

- 이자율 : **연 1.0%**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된 대부액에 대해서는 무이자
- 상환방법
 - 최종 대부실행일로부터 1년 거치 일시 상환(원금 연체 시 지연이자율 연 9.0%)
 - 총 대부잔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최종 대부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상환 가능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거치기간 중 대부약정에 따라 대부금 우선 상환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공동대표는 각각 연대보증) 필요

신청 및 선발

- 신청 및 선발
 - 2020. 7. 1. 이후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신청
 - 매월 지급 예정인 고용유지비용(휴직·휴업수당) 내에서 임금 지급일 전일까지 신청
 - 2회차부터는 직전 월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야 신청 가능
(다만, 신청일 이전 미지급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서는 일괄 소급하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하거나
온라인(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신청

자세한 문의 및 상담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